

# “법정교육관련 개정법령”

## 에너지이용합리화법

### 제88조 (교육)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
- ②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
- ③ 에너지관리대상자,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시설치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

[전문개정 2003 12 30]

##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

### 제50조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<개정 2004 7 12>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<개정 2004 7 12>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

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
[전문개정 1999 8 19]

부칙 (제239호, 2004 7 12)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  - ②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로 등록 또는 선임된 자로서 계속하여 동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종사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
  - ③ (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) 에너지관리공단·시공업자단체·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및 한국열관리시험회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- [별표 12]  
<신설 2004 7 12>

### <비고>

- 1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·교육수수료 및 교육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
-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최초로 등록된 날부터, 검사대상기조종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최초로 선임(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
- 3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
- 4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제2종·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중 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 입력용기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
-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,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향상을 위하여 추가로

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

##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

### 제22조 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[별표 3의2]

<신설 2004 7 12>

###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(제22조제1항 관련)

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대상자	교육기관
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	1일	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고된 자	에너지관리공단

### <비고>

- 1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
- 2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
- 3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



###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법정교육 과정

- ▶ **교육대상자**  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8조에 의하여 현재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로 채용된 자.
- ▶ **중대형보일러 조종자 과정**  
㉞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보일러 용량이 1t/h(난방용의 경우에는 5t/h)를 초과하는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조종자  
㉟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
- ▶ **소형보일러·입력용기 조종자 과정**  
㉞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제1호가목의 대상 보일러 이외의 보일러 및 입력용기 조종자  
㉟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

www.boster.co.kr

## 대용량보일러 세대교체- 스�크럼보일러-스퀘어

에너지절약의 솔루션!!  
부스타 다관설치 시스템보일러-스크럼보일러  
진정한 차세대보일러의 경협-  
부스타 BSS Series!!

**제품**

다관설치시6m  
(대용량보일러 대비 설치면적 대폭 축소)

### 왜? 부스타 스크럼 보일러인가.

1. 국내최초 2톤 무면허 무검사(오일용)로 무인관리가 가능하고 관리비 절약!
2. 설치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넓은공간 활용(기존보일러 2톤대비 45%면 OK!)
3. 열효율용 특수 절연판을 부착 효율 96% 이상 달성하여 연료비 절약!
4. 2톤 용량 폭 990mm(통급용량 국내최소)
5. 자연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보일러 개발 및 첨단인공지능 뉴린(NEURON) 시스템 장착으로 편리함!
6. 예열부하 및 저부하 가동 손실이 없기 때문에 불 필요한 연료 낭비가 없어 경제적인!

**BSS series (2톤×5기)**

서비스 문의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. 1588-3838

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—

## (주)부스타

대표전화: [02] 2062-0196-8

**주요사용처** 빌딩난방, 호텔, 병원, 목욕탕, 사우나, 제약회사, 양민, 축산사료, 분재공장, 학교급식, 섬유염색, 세탁소, 인쇄소, 피자, 고추, 피혁공장, 콘크리트양생, 도금의

**생 산 품 목** 관류/전공/무압/다관설치/스크럼/원격제어 · 연료가스, 보일러동유, 가스·보일러동유

**전국영업소**

- 부산북부(051)903-9555-7 · 대구(053)253-7610-1 · 광주(062)373-5780-3 · 대전(042)252-8885 · 대성(033)662-5611 · 충북(027)42-7161-2 · 청주(043)273-5635 · 창원(055)265-0120
- 전북(063)245-8500 · 서울(02)42242-0241 · 천안(041)577-4232 · 제주(064)748-1290 · 울산(052)236-9484 · 춘천(033)243-0628-9 · 구미(054)471-8600-1 · 석호(051)463-9327
- 경북(054)274-8751 · 부산동부(051)807-8996 · 속초(033)662-8884